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955호, 2015. 1. 1.시행)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연장함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축소 (안 제3조)

- 감면율 100% → 75%

다. 문화재보호구역 법령 위임 재산세 감면을 추가 50%적용(안 제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입법예고문

나. 예산관련 : 해당 없음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구미시 시세의 감면과 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

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 후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2.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
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
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서 지역특산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
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

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라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제외한다)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고아 농공단지
2. 해평 농공단지
3. 산동 농공단지

제8조(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구미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2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별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세의 세목

을 함께 적은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을 함께 적은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10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직접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하여 결정하고,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를 준용

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준용한다.

제1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규정)					
관계 증명 서류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제 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 란은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이므로 신청인은 적지 않습니다.
2.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3.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 칸으로 둡니다.
6.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해당 지번)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결정세액: 감면결정 전의 당초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신청사유: 감면규정 및 사유를 적습니다.
14. 관계증명서류: 관련된 증명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구미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당 초 결정세액	감 면 결정세액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결정 사유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		근거규정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제○조제○항				
		의무 준수 사항					
		○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끝.

구미시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를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학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각각 경감한다.

1.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 삭제 <2014.12.31.>
3.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2.31.>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조례명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 12.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 필요 조항에 대하여 적용시한을 연장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새롭게 감면을 등을 조정

3. 주요내용

- 가. 시각장애 4등급인 자가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5년말까지 면제(안 제2조)
- 나.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도청 소재지인 시지역은 취득세의 100분의 20, 그 외 지역은 취득세의 100분의

40을 '18년 말까지 경감(안 제3조)

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2015년 말까지 취득세 면제(안 제4조)

라.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서 농산물가공품 생산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을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경감 '16년말까지 경감(안 제5조)

마. 관광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개발사업시행자는 100분의 60을 경감,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시는 100분의 50을 경감' 16년 말까지 경감(안 제6조)

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를 '16년말까지 경감(안 제8조)

사. 산업단지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 100분의 60감면, 입주기업 에게 취득세 100분의 75을 '16년말까지 감면(안 제10조)

※ 사업시행자와 '15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17년말까지 종전 감면규정 적용(취득세 면제)

아. 연구개발특구에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16년말까지 면제(안 제11조)

자. 사업자등록한지 20년,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향토기업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을 '16년말까지 경감(안 제12조)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을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25를”을 “20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을”을 “4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을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다음”으로,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50”을 “3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산업단지·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4항 및 제78조 제8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대상과 그에 따른 감면율의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제2항·제3항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우에

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본문 중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을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제4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다.